정오표(필수) - 정연석 변호사 著「민법 로스쿨 선택형의 정석(2022년판)」

※ 본 정오표는 단순한 오기(誤記)보다는 **중대한 필수 수정사항**이나 **중요한 보완사항**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비고란에 '**필수**'라고 표시된 사항은 **반드시 수정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쪽	행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채 권 총 론				
p.19	下 12행	➲아래 삽입	특별손해에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며, 결국 지문은 증명책임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부분이 틀린 것임	
p.22	下 15행	제한할 수는 없다.	제한할 수는 없다. (✕) (➲틀린 지문으로 변경)	필수
	下 14행	➲해설 대체	▸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 ✕, 이행책임 ○ → 과실상계 준용 ✕, 유추적용 ✕ → 다만 담보권리자 고의·과실로 손해 야기되는 등 구체적 사정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 반하면 전부·일부 제한될 수 ○ [2000다72572] 지문에서 쉼표 앞까지는 옳지만, 그 이후가 틀린 지문	
	下 10행	마찬가지이다.	마찬가지이다. (✕) (➲틀린 지문으로 변경)	필수
	下 9행	[99다50538]	▸ 피해자 부주의 이용한 고의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 불허되는 이유는 고의 불법행위가 영득행위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 최종적 보유하게 하여 공평 이념이나 신의칙 반하는 결과 때문 → 고의 불법행위도 이러한 결과 초래되지 않다면 과실상계나 공평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 가능 ○ [2006다16758]	
p.26	下 16행	➲아래 삽입	③ 다른 약정이 없는 한 乙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출제 당시 2006다9408 판결에 근거하여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었으나, 설문의 손해배상액 예정은 乙의 매매대금채무라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것이므로, 금전채무불이행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397조 2항을 고려할 때 '옳은' 지문으로 보아야 하고 출제 오류로 생각됨(**私見**)	필수

p.28	下 10행	➲아래 삽입	▸ 지문은 '참작 여부'를 재량에 속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린 것이고(반드시 직권으로 고려할 의무), '참작비율'의 결정은 재량인 것이 맞음	필수
p.30	下 2행	목적이 될 수 있다. (✖)	목적이 될 수 있다. (➲옳은 지문으로 변경)	필수
	下 6행	목적이 될 수 없다. (✖)	목적이 될 수 없다. (➲옳은 지문으로 변경)	필수
p.31	2행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없다.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없다. (✖) (➲틀린 지문으로 변경)	필수
	3행	➲해설 대체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 ⭕ → 대위소송에서 법원이 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명해도 위법 없음	
p.39	4행	각하하여야 한다.	각하하여야 한다. (✖) (➲틀린 지문으로 변경)	필수
p.40	2행	사해성을 인식하는 것	사해성을 인식하는 것 → 전득자에 대한 소송에서 전득자 악의 판단에 수익자 악의는 불요	
p.47	4행	여 지급청구 ✖	여 지급청구 ✖ ∵ 채권자와 수익자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	
	下 10행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사해행위 이후에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정오표(필수) - 정연석 변호사 著「민법 로스쿨 선택형의 정석(2022년판)」

p.82	下 8행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 (✖) (➲틀린 지문으로 변경)	필수
	下 1행	➲아래 삽입	설문에서 연대보증인 중 1인인 丙의 보증채무를 면제해주면 물상보증인 戊는 485조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게 되므로 책임에 영향이 있다는 것 → 그런데 설문의 경우 실제 계산을 해보면 전술한 보증인설 등에 따라 丙·丁·戊는 1:1:1로 각 부담부분 4,000만원인데, 물상보증인 戊 소유 Y토지가 시가 4,000만원에서 변동이 없다면 戊는 실제 채권자 乙에 대해 자기 부담부분인 4,000만원을 초과하여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음 → 그렇다면 戊는 애초 연대보증인 丙이나 丁에 대해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대위를 할 상황이 없으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丙에 대한 채무면제행위가 戊의 책임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출제 오류에 가깝다고 생각됨(私見)	
p.84	8행	➲해설 대체	구상권은 '내부관계'이므로, 대외관계에서 명의대여자 甲이 채무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채무자 丙은 乙에게 변제하였더라도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甲에 대해 구상할 수 ✖ [통설·판례]	
p.100	下 12행	▸ [불가분채무]	▸ [분할채무]	필수
p.101	下 3행	➲아래 삽입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 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p.110	19행	➲아래 삽입	→ 위 지문은 보증인 丙이 따로 각서를 썼다는 점에서 위 판례의 '부종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옳은 지문으로 출제된 것인데, 대법원에서 실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사례가 없는데다가 부종성을 부정할 정도가 되려면 보증인이 독자적으로 주채무에 준하는 채무를 새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논란이 있는 지문임	

p.112	6행	➲아래 삽입	▸ 주채무자에게 발생한 시효중단사유는 예외 없이 보증인에게 효력 ⭕ → 주채무자의 '승인' 역시 보증인에게 중단 효력 미침 (이는 완성 후 승인을 하는 '시효이익 포기'가 상대효인 것과 구별해야)	
	下 11행	➲아래 삽입	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② 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46조(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채 권 각 론

p.127	2행	➲아래 삽입	ㄹ. 乙이 甲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甲이 丙에게 급부를 한 경우,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 ▸ 계약상 채권의 양수인은 548조 1항 단서 제3자 ✕, 해제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 주장 ✕ ∵ 새로운 이해관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보호 → (이미 양수금을 이행받았다면) 채권양수인은 채무자로부터 받은 급부를 직접 원상회복할 의무 ○ [2000다22850] →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채권양도'에 있어서 원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을 청구할 상대방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급부받은 수익자가 아닌 계약당사자인 요약자를 상대로, '채권양도'에서는 급부받은 채권양수인을 상대로 각 원상회복을 청구함)	필수
p.128	13행	➲아래 삽입	수급인이 자기 재료·노력으로 건물 건축하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도급인이 대금 지급하고 건물 인도 받기까지는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80다1014]	
p.147	17행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다. (✕)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다. (➲옳은 지문으로 변경)	필수
p.148	下 9행	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 (➲틀린 지문으로 변경)	필수
p.156	下 1행	➲아래 삽입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오표(필수) - 정연석 변호사 著「민법 로스쿨 선택형의 정석(2022년판)」

p.158	下 12행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 ✕ [2014다72449]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 ✕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소유권 가진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해야 [2014다72449]	
p.160	下 16행	ㄱ. 기간 약정 없는 토지 임대차계약은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ㄱ. 기간 약정 없는 토지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필수**
p.164	下 7행	➲아래 삽입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①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p.168	下 7행	➲해설 대체	주택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 상실한 임대인으로부터 해제 전에 주택 임차받아 인도·주민등록 마쳐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548조 1항 단서 제3자 ○ → 해제로 소유권 회복한 제3자는 주임법 3조 4항에 의해 임대인 지위 승계 ○ [2003다12717]	**필수**
p.183	下 6행	➲아래 삽입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p.192	4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틀린 지문으로 변경)	**필수**
	20행	➲해설 대체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 미술품반환의 특정물 채권자인 임치인 甲의 과실로 수치인 乙의 반환채무가 불능이 되었으므로, 538조에 의해 乙은 甲에 대해 약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	**필수**

정오표(필수) - 정연석 변호사 著「민법 로스쿨 선택형의 정석(2022년판)」

p.200	下 12행	➲해설 대체	▸ 교환계약의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시가 등을 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할 주의의무 ✖ →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 묵비하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 고지했더라도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 ✖ ∵ 일반적으로 교환계약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 소유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 소유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 상반 지위, 각자가 자신의 지식·경험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 이익 도모할 것 예상 [2000다54406]	
p.201	9행	➲해설 대체	▸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한 계약상 반대급부청구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 ✖ ∵ 자기 책임하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시켜 계약법 기본원리 반함,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아 일반채권자 이익을 해침,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침해 [99다66564] → 설문의 사안에는 비록 사무관리가 등장하지만, 사무관리와 관련된 2011다17106 판결이나 2012다43539 판결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유의	필수
p.218	下 1행	➲아래 삽입	→ 지문은 위 판결을 근거로 출제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판결은 공장저당권의 실행이라는 임의경매였던 점(그 중 동산인 기계의 경매 부분), 대법원은 타인 소유물에 대한 '강제경매'는 무효로 보아 임의경매와 달리 보고 있는 점, 선의취득은 거래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지문에서 '강제경매'라고 기재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음. 즉 타인 소유 동산의 임의경매가 아닌 '강제경매' 절차에서는 경락인의 선의취득은 일어나기 어려움(私見)	
p.223	15행	➲해설 대체	▸ 채무불이행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해야 하기도 하지만(이 점에서도 지문은 틀림), 그보다 대여금반환이라는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어서 채무자 귀책사유 자체를 불문함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필수

p.226	11행	수 없다. (✖)	수 없다. (➲옳은 지문으로 변경)	필수
	12행	➲해설 대체	▸ 실행된 대출에 대한 이사회 추인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의 행위와 대출금 회수 곤란으로 인한 손해 사이 인과관계는 이사 개개인의 선관의무 다했는지 여부로 판단 ⭕, 다른 이사들이 선관의무 위반하여 이사회 추인 결의에 찬성했는지 여부를 전제로 판단해서는 ✖ ∵ 이사회 결의 사항에 관해 이사 개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 묻는 경우 당해 이사 개개인은 자신이 반대했더라도 어차피 이사회 결의 통과했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손해배상책임 면하게 된다면 부당하므로 [2005다56995] 출제 당시 '옳은 지문'이기는 했으나, 지문이 '조합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 혼란이 있음(각 조합원 개인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어서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중요한 지문이 아니므로 결의 찬성과 인과관계 쟁점만 챙겨둘 것	

정오표(필수) - 정연석 변호사 著「민법 로스쿨 선택형의 정석(2022년판)」

민 법 총 칙

p.246	8행	➲해설 대체	▸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이 없으므로 개별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 하에서 태아는 증여를 받을 수 ✖	필수
	16행	➲아래 삽입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p.250	下 6행	➲아래 삽입	▸ 법정추인사유 중 이행·담보제공은 수동을 포함 [통설]	
p.255	16행	전달할 수 있다.	전달할 수 있다. (✖) (➲틀린 지문으로 변경)	필수
p.264	下 1행	➲아래 삽입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p.272	12행	➲아래 삽입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280	8행	X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X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틀린 지문으로 변경)	필수
p.311	15행	사회질서 무효 [92다47892]	사회질서 무효 [92다47892] →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를 당사자인 소유자가 추인해도 무효	
p.316	下 3행	➲해설 대체	▸ 토지거래허가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계약의 당사자는 협력의무 ○ →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97다36996]	필수

p.317	6행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 (➲틀린 지문으로 변경)	필수
p.320	13행	➲아래 삽입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p.325	18행	➲아래 삽입	▸ 실명법 시행 '전'에 상대방 선의 계약명의신탁 약정하고 수탁자 명의 등기 마쳤는데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하지 않아 실명법 적용될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부동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성질상 162조 1항 10년 소멸시효에 걸림 → 신탁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 ⭕ ∵ 부동산의 점유·사용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 ✖, 유예기간 경과한 법률 위반자 보호는 부당 [2009다23313]	

물 권 법

p.351	16행	➲해설 대체	▸ 가등기권자가 별도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경우에, 가등기 이후의 중간처분 등기가 없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도 실질상 동일하다면, 가등기에 의해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혼동으로 소멸할 수는 없으나, 내용에 좇은 의무이행 완료 ⭕ [2004다59546]	필수
p.354	下 7행	59546]	59546] → 앞의 지문 해설에서 살펴본 것처럼 설문과 같이 丙이 받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위 가처분등기는 가등기 이후 경료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처분제한 등기(즉, 중간처분등기)로 볼 수 ✖ → 중간처분등기가 없는 사안과 마찬가지	필수
p.363	4행	➲아래 삽입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8행	➲아래 삽입	→ 동종류 물건 판매 상인에게서 샀더라도 무과실이 아니므로 선의취득 자체가 되지 않고 249 내지 251조가 모두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 소유자 丙은 甲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	
p.371	17행	무권대리 등의 문제가 없어야 → 설문에서 丙이 선의취득 ✖	무권대리 등의 문제가 없어야 → 설문은 '무권대리'이므로 丙은 선의취득 ✖ → 甲은 물권적 청구권 ⭕ (다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丙의 선의취득이 가능한지 논란이 있으므로, 지문에서 '선의·무과실'이라는 것의 인식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p.378	5행	➲아래 삽입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②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정오표(필수) - 정연석 변호사 著「민법 로스쿨 선택형의 정석(2022년판)」

p.391	9행	➲해설 대체	▸ X 토지의 소유자 변동 없이 甲이 12년, 乙이 14년 8개월 이상 각 점유하였으므로, 乙은 기산점을 임의선택하여 역산을 할 수도 있고, 그와 달리 甲의 점유 개시 시점부터 기산하더라도 어차피 乙이 완성자가 되는 사안	필수
p.401	下 4행	➲아래 삽입	▸ 과반수지분권자는 협의 없이 공유물 특정 부분 배타적 사용·수익 ○ ∵ 사용·수익 방법 결정 = 관리행위 [88다카33855]	
p.423	11행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문제되고 있는 시점은 현재임)	
	17행	채권적 성질이라는 의미인데, 지문상 유예기간이 경과했다는 표현이 없어 출제 내용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만일	채권적 성질 → 만일 설문과 달리	
p.430	下 7행	➲아래 삽입	추가 쟁점으로, 乙이 Z건물 매수하여 소이등 마친 시점에 乙이 Y토지 부분에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함 → Z건물 매매가 사해행위 취소되고 乙 등기 말소되어도 대외적으로 여전히 乙이 Z건물의 소유자 겸 Y토지에 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자 → Z건물 강제경매의 경락인 丙이 Z건물 소유권과 함께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당연 승계취득 → 그러나 그 후 Y토지의 강제경매가 이뤄지면, 그 유래인 Y토지에 대한 A의 가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 위와 같이 乙이 취득하여 丙에게 승계된 Y토지에 대한 관법지도 A의 Y토지 가압류(처분금지효력) 이후에 성립한 것이어서 강제경매절차에서 소멸주의로 소멸함 → 丙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새로이 관법지를 취득할 것인지 문제됨(취득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전술함) 본 설문은 2012다73158 판결을 모델로 하면서도, 해당 판결이 토지에 가압류가 아닌 '저당권'이 설정된 사안일 뿐 아니라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동일인 소유인 건물이 존재하던 사안이었던 것을 꽤 많이 변형한 출제 방식임	필수
p.435	下 9행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틀린 지문으로 변경)	필수
p.439	下 12행	➲아래 삽입	▸ 신축자 乙은 보존등기와 상관없이 건물의 법적 소유자이므로 철거의무 ○	
p.446	下 13행 ~ 행	➲문제 07 [20.06모-12]의 ⑤번 지문으로 이동		

정오표(필수) - 정연석 변호사 著「민법 로스쿨 선택형의 정석(2022년판)」

p.461	17행	➲아래 삽입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필수
p.467	下 11행	통지했는데 통지되지 않은 경우라면	통지했는데 해지되지 않은 경우라면	
p.478	下 13행	➲아래 삽입	다만 지문에서 '그 경매는 원칙상 무효가 되나'라는 표현은, '임의경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음(私見) → 즉, 판례는 타인 소유물에 대한 '강제경매'만을 무효로 보고 '임의경매'는 무효로 보지 않음	
p.493	18행	➲아래 삽입	→ 지문에서 마지막 2행을 제외하고는 옳은 지문이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담보하고 모자라는 나머지에 한함	